힘내라 대한민국 / 식품의약품안전처	보 도 자 료	배 포	2020. 9. 16.(수)
		담 당 과	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
		과 장	오금순(☎043-719-2501) 이종권(☎043-719-4351)
		연 구 관	선남규(☎043-719-2502) 남혜선(☎043-719-4352)

식품용 살균제,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!

코로나19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… 소비자 각별한 주의 필요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**식품용 살균제**나 **기구등의 살균소독제**를 **방역용**이나 **인체소독용**으로 **오용**하고 있어 **소비자**의 **각별한 주의**가 **필요**하다고 밝혔습니다.

○ **식품첨가물**(식품용 살균제, 기구등의 살균소독제)은 식품을 제조·가공·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**식품**이나 **식품용 기구·용기·포장**에 **사용**되는 **물질**이며, **방역용**이나 **인체 소독용**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닙니다.

*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 시,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음

- 특히,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, 차아염소산나트륨,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

식품용 살균제

▲용도
- 과일류,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

▲사용 대상
- 과일류, 채소류 등 식품
- 식육(가금류, 포유류)

기구등의 살균소독제

▲용도
- 식품용 기구·용기·포장의 살균·소독

▲사용 대상
- 식품접객업용 기구등, 집단급식소용 (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) 기구등
- 유가공용 기구등
- 식품의 제조·가공용 기구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한편, 방역용 **소독제**는 '코로나19 살균·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(환경부)'에 따라 **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**(방역용)이나 **신고된 제품**(자가소독용)을 **사용**하고,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참고로 **세계보건기구**(WHO)에서도 방역용 **살균소독제**를 **인체**에 **직접 사용**하지 **않도록 권고**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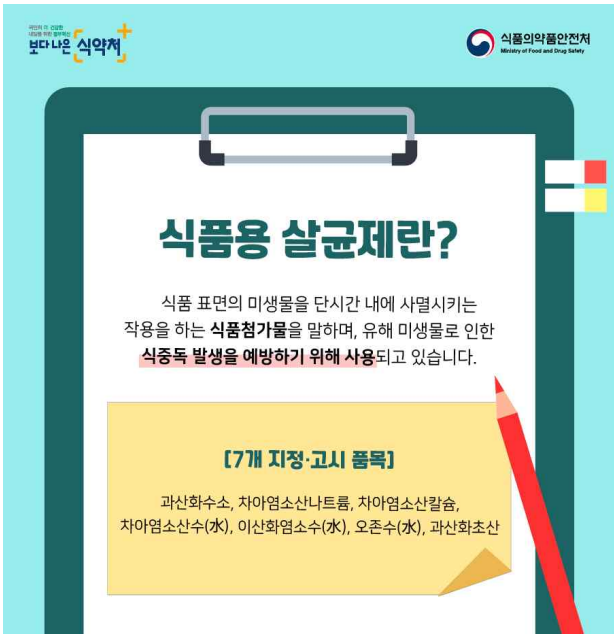
□ 식약처는 **'식품용 살균제'** 및 **'기구등의 살균소독제'**의 **안전한 사용**과 **오용 방지**를 위해 **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 배포(9월)** 등 **홍보**를 **강화**할 계획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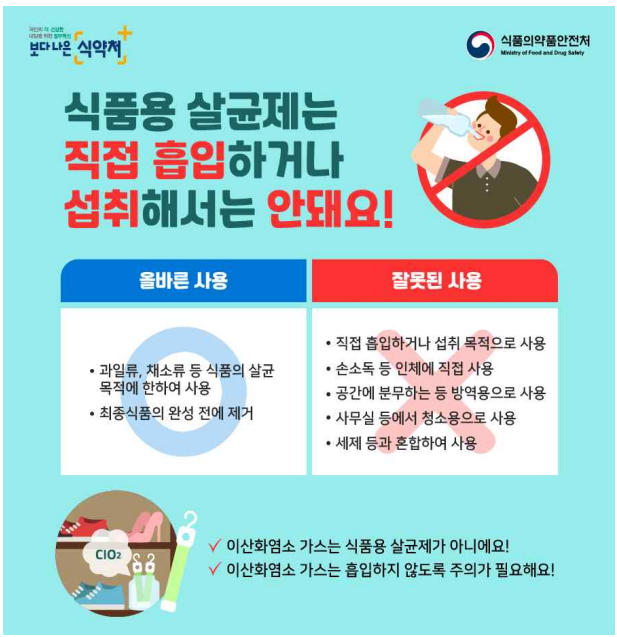
○ 참고로, 식품용 살균제 등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(www.foodsafety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식품안전나라 > 식품·안전 > 식품첨가물 > 첨가물 안전지식

<첨부 1> 식품용 살균제 바로알기 홍보물(카드뉴스)









<첨부 2>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 홍보물(카드뉴스)

